

라데사 포레 매곡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샘플주택 운영 안내

- 라데사 포레 매곡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예약제 샘플주택 관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샘플주택 관람이 가능하며,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사전서류 접수 기간 중 샘플 주택을 관람 하실수있도록 계획중이며, 코로나19 감염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샘플 주택 운영관련 안내

▶ 사전예약자 관람 접수

- 사전예약자 관람 접수 방법 : 홈페이지(<http://ladesa.co.kr>) 및 전화예약을 통하여 사전예약
- 사전예약자 관람 접수 일정 :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사전예약자 샘플 주택 관람은 본인 외 1인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사전서류 접수 기간(예비입주자 포함)

- 2022년 03월 19일(토) ~ 2022년 03월 24일(목) 6일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 당첨자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샘플 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특별공급 신청일

- 샘플 주택 특별공급 신청 일정 : 2022년 03월 07일(월) 10:00 ~ 14:00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샘플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 접수 및 그 외 모두 불가함.)

2. 샘플 주택 방문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샘플 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샘플 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를 불응할 경우
- 비닐장갑 착용 등 방역 지침에 불이행하는 모든 경우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라데사 포레 매곡은 상담전화(☎062-574-5754),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2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공동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공동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2순위 청약 가능)됩니다.

■ 본 공동 주택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

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 함)

- 본 공동 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공동 주택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계속하여 1년(2021.02.24. 이전부터 계속 거주)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

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촉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	-

※ 1순위 : 입주자저촉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촉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공동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촉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홍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샘플 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샘플 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공동 주택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ladesa.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광주광역시 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의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전매포함) 체결 시 “을”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 와는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법정납부기한(계약체결일)후 당일 미납부 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6개월 초과하여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을 가산세로 부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구입 및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 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민간 사전 청약을 포함)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해당지역(광주 1년이상 거주)	기타지역 (광주 1년미만, 전라남도거주)			
일정	03월 07일(월)	03월 08일(화)	03월 10일(목)	03월 11일(금)	03월 17일(목)	03월 28일(월) ~ 03월 30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샘플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샘플주택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샘플 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라데사 포레 매곡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동 주택은 준공 후 분양 공동 주택으로 마이너스 옵션 미적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발코니확장)이 모두 적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발코니확장) 미선택 및 변경, 취소가 불가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동주택과-2282호(2022.02.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497번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 [내진 성능]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E)	내진능력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	S4	1.3	VII = 0.2039g	D	1.2	4.0

- [구분지상권] 해당 없음.
- 공급규모 : 공동주택(연립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2개동 총 44세대 [특별공급 4세대(다자녀가구 3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4월 01일 이후
- 준공일 : 2021년 12월 08일(사업계획 승인번호 : 2019-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인영 주택	2022000096	01	109.5536	109	109.5536	16.1545	125.7081	82.3403	208.0484	101.3642	4	-	-	-	-	-	4	1	
		02	137.1131A	137A	137.1131	19.1890	156.3021	103.0539	259.3560	126.8636	36	-	3	-	1	-	4	32	9
		03	137.1131B	137B	137.1131	19.0402	156.1533	103.0539	259.2072	126.8636	4	-	-	-	-	-	4	4	1
	합 계										44	-	3	-	1	-	4	40	11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생플생플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라대사 포레 매곡 생플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자 합병 및 분할, 확장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벽체 등 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각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하여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생플 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판플랫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증강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지면적에서 1% 이내 면적변동 및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가감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지면적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할 시 계약자는 사전동의하기로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및 발코니확장) 포함]

(단위 : 원, 세대)

타입	공급 세대수	동별	층별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총 분양대금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시)
109	4	102동 5호	1층	1	137,824,610	567,613,991	56,761,399	762,200,000	762,200,000	76,220,000	685,980,000
			2층	1	142,182,485	585,561,377	58,556,138	786,300,000	786,300,000	78,630,000	707,670,000
			3층	1	145,075,682	597,476,653	59,747,665	802,300,000	802,300,000	80,230,000	722,070,000
			4층	1	174,242,710	717,597,536	71,759,754	963,600,000	963,600,000	96,360,000	867,240,000
137A	24	101동 1호~6호	1층	6	174,984,091	720,650,826	72,065,083	967,700,000	967,700,000	96,770,000	870,930,000
			2층	6	180,390,751	742,917,499	74,291,750	997,600,000	997,600,000	99,760,000	897,840,000
			3층	6	183,989,164	757,737,124	75,773,712	1,017,500,000	1,017,500,000	101,750,000	915,750,000
			4층	6	220,262,604	907,124,905	90,712,491	1,218,100,000	1,218,100,000	121,810,000	1,096,290,000
137A	12	102동 2호~4호	1층	3	171,367,597	705,756,730	70,575,673	947,700,000	947,700,000	94,770,000	852,930,000
			2층	3	176,774,257	728,023,403	72,802,340	977,600,000	977,600,000	97,760,000	879,840,000
			3층	3	180,390,751	742,917,499	74,291,750	997,600,000	997,600,000	99,760,000	897,840,000
			4층	3	216,646,109	892,230,810	89,223,081	1,198,100,000	1,198,100,000	119,810,000	1,078,290,000
137B	4	102동1호	1층	1	171,367,597	705,756,730	70,575,673	947,700,000	947,700,000	94,770,000	852,930,000
			2층	1	176,774,257	728,023,403	72,802,340	977,600,000	977,600,000	97,760,000	879,840,000
			3층	1	180,390,751	742,917,499	74,291,750	997,600,000	997,600,000	99,760,000	897,840,000
			4층	1	216,646,109	892,230,810	89,223,081	1,198,100,000	1,198,100,000	119,810,000	1,078,290,000

※ 분양대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공동 주택은 준공 후 분양 공동 주택으로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발코니확장)이 모두 적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발코니확장) 미선택 및 변경, 취소가 불가합니다.

※ 상기 총 분양대금 계약금을 납부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계약체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 주택은 85㎡초과 되는 건물로서 VAT 별도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통 유의 사항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산규정은 분양계약서에 따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대금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은 미포함된 가격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총 분양대금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및 발코니확장]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미선택 및 변경, 취소가 불가능하며 일부 미선택도 불가합니다.
- 각타입별 유상 옵션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	유상옵션 품목
109A	LG시스템 에어컨 5대, LG빌트인 가전 6종(스타일러, 식기세척기, 정수기,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와인셀러), 하츠 후드, 하츠 3구 인덕션, 하츠 2구 인덕션, LG 하우스스 고급 창호, 일체형 고급 비데 2개소, 아일랜드 식탁
137A,137B	LG시스템 에어컨 5대, LG빌트인 가전 6종(스타일러, 식기세척기, 정수기,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와인셀러), 하츠 후드, 하츠 3구 인덕션, 하츠 2구 인덕션, LG 하우스스 고급 창호, 일체형 고급 비데 2개소, 아일랜드 식탁, 주방 슬라이딩 3연동 도어, 슬라이딩 도어 2개소(침실4), 한샘 시스템 선반(침실4)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계단, 복도, 벽체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 기타공용부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본 공동 주택은 「준공 후 분양」 공동 주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로 산정됨)

- 본 공동 주택은 “준공 후 분양” 공동 주택으로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없으므로 중도금 및 잔금 중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스스로 대출상환 및 금액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 불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공동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본 공동 주택은 “준공 후 분양” 공동 주택으로 계약기간 이후 개별 입주예정자들의 입주 예정일에 따라 별도의 사전방문 일정을 통보하여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동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1조 제3항 21호에 의거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에 적합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항목	조명설비	태양광	평점
	36.69KW	43.12KW	54.32점

- 본 공동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1조 제3항 28호에 의거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동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3항 29호 에 의거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은 주택법 제 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의거 500세대 이상이 되지 않은바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 본 공동 주택의 기본 주택 성능이 아래와 같이 검사가 완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목		기준	시험결과	시험의뢰처	적용 법규
바닥 경량 충격음		58(db)이하	평균 53db	한국인정기구	주택법 35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60조의 2.3, 건축법제49조 제4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4항」
바닥 중량 충격음		50(db)이하	평균 48db	한국인정기구	
실내공기질측정	벤젠	30 이하	평균 0.8	상록환경위생 주식회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9조1항
	톨루엔	1,000 이하	평균 239.1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평균 27.3		
	에틸벤젠	360 이하	평균 51.0		
	자일렌	700 이하	평균 145.4		
	스티렌	300 이하	평균 68.0		
	라돈	148이하	평균 94.1		
실외 소음도	낮시간대	65db 미만	평균 55.06db	상록환경위생 주식회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밤시간대		평균 47.83db		

- 본 공동 주택의 준공 후 진행하는 행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지하주차장 입구 문주 설치
 - ㉡ 지하 주차장 램프 지붕 설치
 - ㉢ 지상 보행자 출입구 부위 출입문 및 문주 설치
 - ㉣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2개소 설치
 - ㉤ 동측 보행자 통로 부위 출입문 2개소 설치
- ※ 상기 공사는 입주민의 편의성 증진과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한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동 주택은 행위허가 외 입주민의 편의 및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다음 행위를 입주 전 진행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주민공동시설 내 세대 창고 신설
 - ㉡ 외부 경계 벽체 고급형 석재 시공 및 난간 설치
- 본 공동 주택의 최초 입주자 계약금 납입일은 상기 행위허가 사용검사 필증 발급예정일(약 2022년 03월 초) 이후 임을 알려드립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109	137A	137B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3	-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	1
합 계	-	4	-	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동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1193 2130 1380">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임신인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광주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 내 제출 또는 샘플 주택 청약접수 시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	샘플 주택 비치(특별공급신청서의 경우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 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원수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외 불가,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샘플 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속	피부양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비속	피부양 직계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샘플 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서 등 제출서류 발급시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샘플 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자) 중 입주자지속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15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 공동 주택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공동 주택 청약이 불가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 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입주자 지속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지속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p>※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지속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 가정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p>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청약접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형태로 총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일반 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정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정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가정제 개요(가정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정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 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중복청약접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지속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 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통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해당 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p>청약 가능함. (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p> <p>※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p> <p>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p> <p>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p> <p>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p> <p>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p>
--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 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 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12.29)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p>

	<p>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정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정항목	가정상한	가정구분	점수	가정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정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정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일반공급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 내 제출)

구 분	서류유형		계 약 시 구 비 사 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공통	0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0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본인만 가능, 대리인 계약불가),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합니다.) ※ 본인 발급본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본은 절대 불가함
		0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서명)
		0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0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0	주민등록초본[전입발생일,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0	가족관계증명서 1통(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0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만 18세 이상인 자녀의 부양가족 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인자에 한함)
		0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0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1부)
		0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0	직계 존·비속의 출입국사실증명원 1부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0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0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0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0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0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 - 계약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샘플샘플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샘플 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2005. 06. 2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2.03.07.(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샘플 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사업주체 샘플 주택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2.03.08.(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1순위(기타지역)	2022.03.10.(목) 09:00~17:30		
	2순위	2022.03.11.(금)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샘플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샘플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 style="text-align: center;">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p>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정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지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 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 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추첨제로 입 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정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 및 전라남도 지역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p>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p>•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p>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샘플 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샘플 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샘플 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중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ladesa.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함.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및 사업주체)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03.17.(목)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3.28.(월)~2022.03.30.(수)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샘플 주택 (장소 : 당해 건물 101동 106호)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샘플 주택(특별 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 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3.17.(목) ~ 2022.03.26.(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3.1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통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특별공급 및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및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샘플 주택에 방문하여 '단순입력오류 계좌 부활 신청서 (샘플 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공동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입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전에 반드시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등) 등은 현장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 주택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일(2020.10.27.)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공동 주택은 “준공 후 분양” 공동 주택으로 별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없으므로 스스로 중도금 및 잔금에 대출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스스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계약금, 잔금)	KB국민은행	839201-04-26399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계약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샘플샘플주택 현금수납 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301호 '홍길동' →10103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잔금)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샘플 주택에서 현장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Ⅶ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 본 공동 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사 또는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샘플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또는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샘플주택내 모형 등의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 주택은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됩니다.
-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별도의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 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 주택 계약연적외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샘플주택,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공동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샘플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세대내부 불박이장류(신발장, 주방장, 불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후면 등) 배면 및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정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마루판, 벽지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공동 주택과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샘플주택의 모형도 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 및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주택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동 주택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항,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공동 주택의 입주 후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홍보물(카탈로그,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등)

- 각종 광고 홍보물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샘플주택 사인물, 홈페이지, 카탈로그(공급안내)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 하기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제작 시점, 여건 변화 반영 정도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샘플 주택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자료, 공급안내 등)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명칭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 본 공동 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공동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동 주택 공급가격과 유상옵션(발코니 확장비 및 기타 유상옵션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유상옵션의 경우 별도의 선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피난 대피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실3 발코니 및 주방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등 고정 설치물 설치 부위의 바닥, 벽, 천장 등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침실 불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안내된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기계작동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싱크 하부 장에는 난방용 분배기 및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침실3 발코니 중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동일 세대 타입이어도 일부세대는 실외기실 공간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세대별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에 별도 구획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공용홀

- 승강기 홀(공용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용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홀(공용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개폐 유무 또는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기 및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승강기 홀(공용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 및 인접 세대의 승강기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샘플 주택내 비치된 도면 등을 참고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홀(공용홀)의 바닥, 벽체의 마감 재질 및 색상등, 계단실 창호의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 내부 여건

-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에 있는 하북초등학교로 인해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 주택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계선에 인접한 102동 측면 또는 배면에 설치되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되었고 이에 대한 위치조정 및 수량 변경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기계실포함 저수조등이 단지 하부에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은 경로 저감을 장비(제습기 등)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 될 예정입니다.
- 공동 주택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주택 저층부 세대는 보행자 통로, 산책로, 조경 수목, 조명, 탐라이트, D.A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및 빛, 쓰레기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으로 인하여 조망, 일조,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 포함된 시설물(경계선 내에 있는 공원 산책로)과 기부채납 되지 않는 시설물(방음벽)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영구배수공법으로 인한 유지·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배수펌프 가동 전기세 및 시관로 유출 하수도세 등)
 - 시공중 시설물(관로공사, 영구벽체, 교통안전시설물 등)공사로 인해 발행하는 도로점용료 등
 -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 공동 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제연헬륨,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부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출입구에 인접 동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장애인 통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의 사항에 따라 시설물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 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준공 및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 주택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지하 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별 주차 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 동선 길이 등)
-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릅니다.
- 본 아파트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각종 주출입구의 형태 및 크기, 진입 방식등은 변경될 수 있고,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 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동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공동 주택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 구획은 각 동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주차 대수가 일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 주차장 및 승강기 홀 상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각동과 지역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환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내부 차로 높이 2.6M, 출입구 높이는 2.6M로 시공됩니다.
- 단위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공동 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공동 주택 준공 전 약 2개월간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인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본 공동 주택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중 환기(D/A (설비환기구))를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D, A·D, PIT공간의 마감 미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주차 및 충전시설의 위치와 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초등학교 배치는 하백초등학교, 중학교 배치는 광주광역시 학교 군으로 학교 배정 및 계획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로 추후 변경가능하고 시행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관할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지하 주차장 입구가 위치한 해당 동 라인의 경우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보행자에 의해 사생활권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특히,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환풍 급배기구(D/A)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중 환기(D/A (설비환기구))를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D/A)가 일부 동의 전 후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형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학교인접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샘플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Ⅷ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하나, 본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입주예정자 입주지정(예정)일에 따른 별도의 입주자 사전방문 기간을 두어 입주자 사전방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자 사전방문 후속조치(하자보수)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입주지정(예정)일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자 별 입주자 사전방문 기간

입주지정(예정)일	입주자 사전방문일
즉시 입주자 및 15일 이내	공급계약 체결일
15일 초과 ~ 30일 이내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
30일 초과	추후 통보

• 입주자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즉시입주자 및 15일 이내 입주자 제외)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입주예정일 : 2022년 04월 01일 이후(준공 완료 / 즉시 입주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1항에 의거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되나, 본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공급계약 체결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 통보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에 의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5일을 입주지정기간으로 설정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계약자별 입주지정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 관리형 토지신탁

-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위탁자 김선갑이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의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김선갑 및 (주)천지인씨앤씨”임을 “분양받은 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 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는 김선갑 및 (주)천지인씨앤씨가 부담 합니다.
- “김선갑 및 (주)천지인씨앤씨”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수익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분양받은 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받은 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김선갑 및 (주)천지인씨앤씨”(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양받은 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토목/설비	전기/소방/통신	비고
회사명	서원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길이앤씨	
감리금액	510,337,600	33,440,000	

■ **사업주체, 시공회사 및 분양대행사**

구 분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수탁사(사업주체)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120-81-67944
위탁자	김 선 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92 406호	-
수익사	(주)천지인씨앤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제이 144호	695-86-01140
시공사	승윤종합건설(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31번길 27, 201호	109-81-69775
분양대행사	유한회사 지안디앤씨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217번길 38-11, 2층(용봉동)	861-81-00777

공급위치 및 샘플주택 안내

라데사 포레 매곡 현장 및 샘플주택



- 샘플주택(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497번지(신주소), 매곡동 328번지(구주소)
- 운영시간 : 10:00 ~ 18:00
- 분양문의 : 062-574-5754
- 홈페이지 : <http://ladesa.co.kr>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샘플주택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샘플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